

제151호

행정명령

혹독한 겨울 날씨 동안 노숙자 관련 비상 선언

뉴욕주는 현재 겨울철이어서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임박한 위험을 제기하는 혹독한 겨울 날씨 하에 있습니다;

그러한 혹독한 겨울 날씨는 국립기상대의 체감온도 계산을 포함하여 화씨 32도 이하의 기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혹독한 겨울 날씨가 발생할 때 그것은 뉴욕주의 시민, 특히 노숙자들에게 저체온증 및 사망 가능성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제기합니다;

뉴욕주 헌법에 따라 뉴욕주 정부는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정부가 뉴욕주 노숙자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도움, 보살핌과 지원이 제공되도록 행동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그 니즈는 겨울달 동안에 더욱 높아집니다;

노숙은 대도시로부터 작은 타운과 시골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주의 모든 지역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주의 특정 부분은 최근 역사에서 전례 없는 노숙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노숙 주민들의 주거 및 지지 서비스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노숙 단독 성인, 가족 및 단독 청소년을 위한 77,000여 비상 쉼터 베드라는 종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통상적으로 경찰 기관 자원 및 현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협조하여 노숙자들에게 서비스를 연장하고 그들의 쉼터 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주정부는 지역 사회복지 지구들이 시설, 자원 또는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지역 사회복지 지구들이 노숙자들 내 각 하위 그룹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종합적인 지역 쉼터 및 지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즉각 시작하고 명령할 것입니다;

뉴욕주 법률은 주정부가 시민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강제 입소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 행정법 제2-B조 제28 및 29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과 정신위생법을 포함한 뉴욕주 법률과 그러한 법률의 사법적 해석에 따라 그러한 혹독한 겨울 날씨의 영향과 그러한 날씨가 노숙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본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본인은 모든 지역 사회복지 지구, 뉴욕주 경찰을 포함한 경찰 기관들 및 주 기관들이 혹독한 겨울 날씨 속에 노숙하면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쉼터를 찾으려고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식별하여 그들을 적절한 쉼터로 이동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합니다;

본인은 모든 지역 사회복지 지구가 쉼터 시간을 연장하고, 노숙자들이 옥내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며,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데 추위 관련 부상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정신위생법 제9.41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적절한 시설로 강제 수송과 관련하여 지역 경찰 및 기타 해당 요원들과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그리고 항상 주의 헌법과 기존 법규에 따라 노숙자가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 경찰 및 모든 경찰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인은 모든 지역 사회복지 지구가 임시 주거 지원 배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시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잘 정비 및 감독되고 기존 주 및 현지 법규, 행정 명령 및 가이드라인을 온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 명령은 2016년 1월 5일부로 발효되며, 상반되는 모든 현지 법률뿐만 아니라 현지 명령, 지침 또는 정책을 폐지합니다.

본인 자필과 올버니시의 주 옥새로 이천일십육년 일월삼일에 발령.

주지사

주지사 비서